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2월 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서울시립대 창업 전담조직 ‘창업지원단’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,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재학생 및 학내외 구성원에 대한 대학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 제1항에 제12호 “창업지원단”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2018년도 세출예산 반영 예정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행정규제 신설·강화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평가 제외 대상임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 대상임
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평가 제외 법령임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갈등 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
: 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17.11.2. ~ 11.22.) 결과: 제출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창업지원단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 다. 1. ~ 1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창업지원단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및 시행규칙 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창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(설치 및 운영비)

-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 창업교육센터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를 통합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 전담조직으로 창업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함에 따른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 추계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추정

○ 비용추계의 결과(세출)

- 창업지원업무 관련 예산은 2015년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회계로 편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, 1차년도('18년)예산은 창업지원단 설립예정 시기 이후를 고려하여 편성되었음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'18)	('19)	('20)	('21)	('22)	
창업지원단	○ 초기비용 (집기비품설치)	45,000	-	-	-	-	45,000
	○ 연간예산	450,734	450,750	475,100	498,533	523,220	2,398,337
	총 비용	495,734	450,750	475,100	498,533	523,220	2,443,337

○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지원금	425,734	380,750	405,100	428,533	453,220	2,093,337
국고지원금 (중소기업청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기타 (서대문구청)	20,000	20,000	20,000	20,000	20,000	100,000
합 계	495,734	450,750	475,100	498,533	523,220	2,443,337

4. 작성자

-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설정환(2133-6747)